

대전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9나546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재판경과

대전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9나546 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 12. 20 선고 2018가단116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변론종결 2019. 6. 13.

판결 선고 2019. 7. 18.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 12. 20. 선고 2018가단116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부여군 C 대 71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53.9㎡ 지상 조적조 함석스레트 및 강판지붕 단층 주택 및 보일러실,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17.5㎡ 지상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차양시설, 별지 도면 표시 8, 11, 12, 9, 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21.0㎡ 지상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주택 및 창고를 각 철거하고, 충남 부여군 C 대 711㎡를 인도하고, 2018. 5. 26.부터 위 토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16,8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5. 26.부터 충남 부여군 C 대 711㎡에 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16,8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원고는 항소이유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임료의 총액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권을 취득한 다음날인 2018. 5. 26.부터 원고가 위 지분권을 상실한 날의 전날인 2018. 11. 21.까지의 임료 상당액 98,560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판결이 정당하게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가 2018. 6. 21. 이 사건 토지의 과반수 지분권자인 E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을 승낙 받았으므로 위 날짜 이후 피고의 점유는 E의 공유물관리권에 터 잡은 적법한 점유로서 소수 지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부당이득금은 2018. 5. 26.부터 2018. 6. 20.까지 원고의 지분에 관한 임료 상당액인 14,451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김용덕

판사곽희경

판사송승환

별지